

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

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[지법 § 103조의33]

-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
-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

□ 신고·납부 의무

- 연결모법인

□ 납세지

- 특별시·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
- 단,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

□ 과세표준 [지법 § 103조의34]

-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
- 단,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 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

□ 연결산출세액 [지법 § 103조의35] [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]

$$\text{연결산출세액} = (\text{과세표준} \times \text{세율}) + \text{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}$$

-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: 1년으로 환산(지법 §103조의21② 준용)

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

$$\text{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} = \text{과세표준 개별귀속액}^1) \times \text{연결세율}^2)$$

$$\text{과세표준 개별귀속액}^1) = \text{연결소득 개별귀속액} - \text{결손금} - \text{비과세소득} - \text{소득공제액}$$

예 시

1. 과세자료

<법인세 과세자료>					<안분율>			
구분	합계	모법인S	자법인A	자 법인 B	구분	모법인S	자법인A	자 법인 B
각 사업연도 소득	-	80억	35억	△21억	청주	50%	30%	-
각 연결사업연도 소득	100억	90억	30억	△20억	부산	30%	-	-
연결방식 도입 후 결손금	5억	-	5억	-	대구	20%	70%	100%
법인세 소득공제	15억	15억	=	-	합계	100%	100%	100%
법인세 세액공제	2.8억	1.85억	0.95억	-				
법인세 중간예납세액	3억	2억	1억	-				

2. 법인지방소득세 계산

계산순서	모법인S	자법인A	자법인B	합계 및 계산
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	90억	30억	△20억	100억 = 90+30-20
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	75억	25억	-	100억 × 9/12, 100억 × 3/12
③ 과세표준 개별귀속액	60억	20억	-	80억 = (75 - 15) + (25 - 5)
④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	80억			80억 = 60억 + 20억
⑤ 연결 산출세액	1.58억			1.58억 = 80억 × 2% - 200만
⑥ 연결세율	1.975%			1,975 = 1.58억 / 80억
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	11,850만	3,950만	-	11,850만 = 60억 × 1.975% 3,950만 = 20억 × 1.975%
⑧ 청주시 산출세액	5,925만	1,185만	-	5,925만 = 11,850 × 50% 1,185만 = 3,950 × 30%
⑨ 청주시 신고세액	7,110만			7,110만 = 5,925 + 1,185

연결세율²⁾ = 연결산출세액 / 과세표준

□ 신고·납부 [지법 §103조의37]

○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서식
신고서	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	44호 43호의7(을)
첨부1	각 연결법인의 ③ 재무상태표,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 ⑥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	44호의2
첨부2	⑦ 지법 §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⑦-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·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·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·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⑦-2 현금흐름표(외부감사 대상 법인) ⑦-3 표시통화재무제표 ·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 통화로 채택한 경우 ⑦-4 원화재무제표 ·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원화외의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⑦-5 합병(분할)시 부속서류 등 · 합병(분할)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, 승계한 자산 및 부채 명세서 ·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, 합병(분할)등기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	44호의3 44호의4 44호의5
납부서	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(※ 수기 납부서 납부 불가)	14호 43호의8

□ 가산세

○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(지법 §103조의30) 준용